

#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Supporting Policy on Old Aged Preparation*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타당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가치재로서의 기능에 대한 고찰과 함께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보편적인 확대와 효과증진을 위해 현재의 지원정책에 대한 한계와 개선점을 논의한다.

##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100세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막상 은퇴기간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별다른 준비 없이 살아도 노후에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환상은 위험하다. 연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준비방법을 몰라 ‘나중에 해야지’ 또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를 미루고 있다. 심지어 ‘나중에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의존적 기대심리에 빠져 준비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지연시킨다면 실제 노후생활은 그리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와 건강 그리고 성향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공경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노인에서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는 활력있는 노인(active ageing)으로 노인집단의 구성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은퇴를 준비하는 비은퇴자들에게도 나타나, 점차 분화되는 노인들만큼이나 경제적 상태, 건강, 그리고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노후준비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에 맞는 운동과 식이조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노후준비에도 정기적으로 노후준비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신청해서 검진을 받을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생활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신하여 건강상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 이는 노후설계에서도 적용된다. 국가가 노후설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검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은 역시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본 논의에서는 노후설

계지원법(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설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 2. 노후준비 수준과 문제점 진단

### 1) 노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노후준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힘든 이유는 노후라고 인식하는 시점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노후준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 인식

표 1. 조사대상자 특성별 주관적 노후 시작 연령

구분		노후시작 시기 평균 (세)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	첫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	회갑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	기타
성별	남	68.2	26.1	0.6	3.4	8.9	57.7	3.1	0.2
	여	67.2	19.8	1	5.3	7.2	63.5	2.7	0.4
연령대	50대 미만	66.7	27.8	0	3.4	8.6	57.8	2.4	0
	50대	67.0	26.6	0.5	3.6	9.6	55.9	3.5	0.3
	60대	67.5	22.4	1.2	5	8.8	59.6	2.8	0.3
	70대	68.3	19.3	0.8	4.3	5.7	67	2.5	0.5
	80대 이상	68.5	17.8	0.6	6.4	5.6	67.2	2.4	0
최종 학력	무학	68.3	16.4	0.6	5	5.3	69.7	2.7	0.3
	초졸	67.6	19.6	1	5.7	6.5	64.3	2.6	0.3
	중졸	67.5	24.6	1.1	4.6	10.4	56.4	2.6	0.4
	고졸	67.5	26.9	0.5	3.3	10.4	56	2.5	0.3
	대졸 이상	67.2	29.4	1.1	2.5	6.7	54.7	5.5	0.1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68.1	27.6	0.3	3.3	10.4	55.3	2.8	0.3
	비임금근로자	68.4	16.2	0.7	5.4	6.2	67.4	4	0
	비취업자	67.2	22.4	1.1	4.8	7.5	61.3	2.5	0.4
전체		67.6	22.5	0.8	4.5	7.9	61.1	2.8	0.3

자료: 권혁창 외(2012), 제4차(2011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적으로 67.6세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취업자일수록 노후 시작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노후시작의 계기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고령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61.1%가 응답했으며,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로 그 다음을 나타냈고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라는 응답이 7.9%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미시적인 차이 뿐 만아니라 거시적 경제변화에 따라 노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가 2005년과 2007년에는 경제상태가 안정되면서 노후에 대한 낙관적으로 이어져, 생활비전망이 점차 높아졌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상태가 악화되면서 2009년과 2011년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후준비는 장기적인 준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거시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 2) 불확실성과 노후상태

노후에 대한 인식이 개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크기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자들은 예기치 못한 기대수명의 연장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등의 이유로 적절한 노후소득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발전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베이비붐세대들과 그 이전 세대들은 자식농사만 잘 지으면 으레 자신의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sup>1)</sup>가 높아졌고,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핵가족화는 그들의 보험역할을 하던 자녀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로 인해 현 노인세대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주관적 필요 최소생활비 및 적정노후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필요최소노후생활비		필요적정노후생활비	
	부부기준	개인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1차(2005)	1,193.8	775.3	1,722.3	1,120.5
2차(2007)	1,235.5	792.8	1,795.9	1,154.1
3차(2009)	1,244.6	782.9	1,782.2	1,145.2
4차(2011)	1,241.3	730.0	1,760.1	1,042.1

자료: 권혁창 외(2012), 제4차(2011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표 6-3> 인용.

1)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는 생애주기모형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자신의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하지만 기대했던 수명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서 노후소득이 부족해져 여생동안 소비를 줄이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국가로부터 공적부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험(risk)을 말함.

의 노후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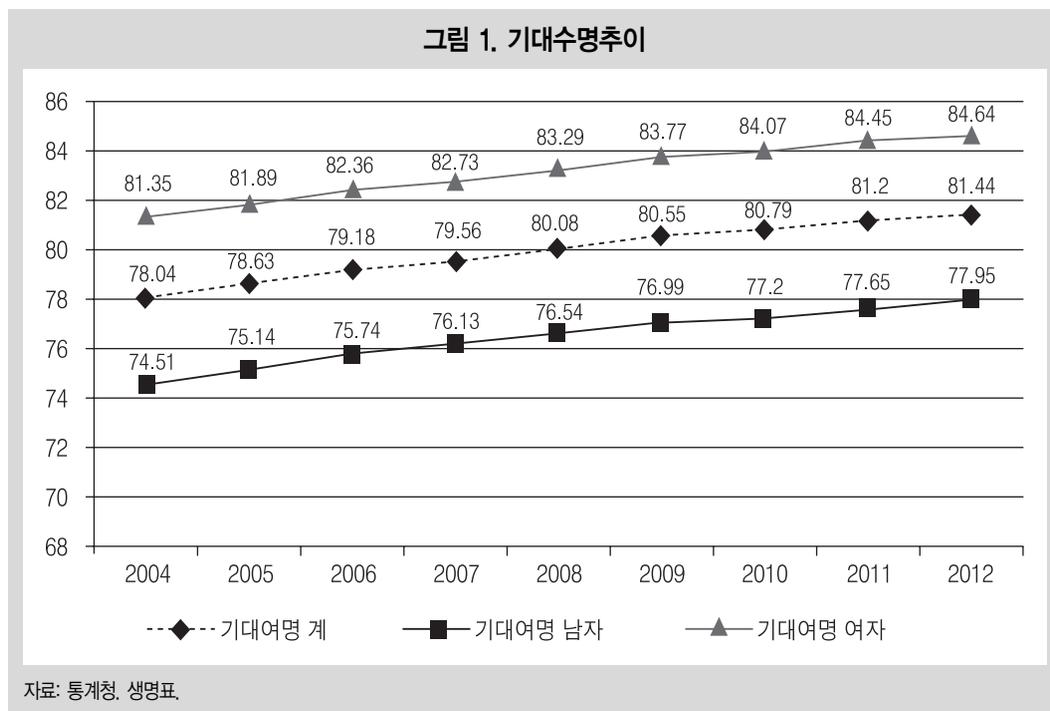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04년 남자가 74.51세에서 2012년 77.95세로 3.44세가 증가했으며 여성은 2004년 81.35세에서 2012년 84.64세로 3.29세가 증가하여 전체 기대수명은 2004년 78.04세에서 2012년 81.44세로 3.4세가 증가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현재의 고령자들의 삶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으로 귀결된다.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절대빈곤율이 2003년

25.7%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30.2%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1년까지도 30.2%를 나타내면서 높은 절대적 빈곤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가계지출에 대한 절대빈곤율은 가처분소득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역시 2003년 16.1%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 2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소 낮아져 2011년에 24.3%를 나타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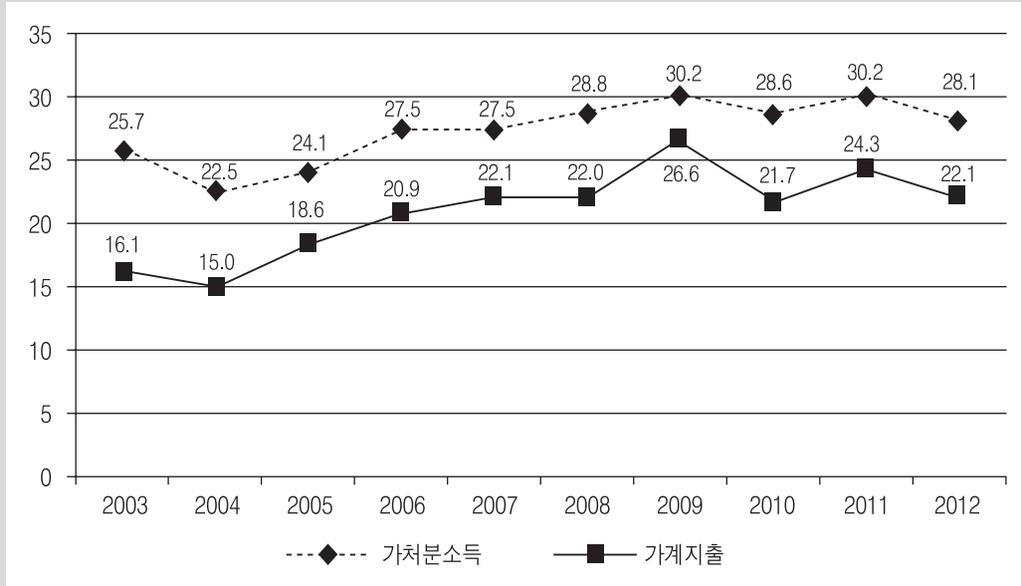
이처럼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미성숙과 사적연금의 비활성화를 들지만 무엇보다도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

그림 1. 기대수명추이



2) 임완섭(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2.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과 가계지출의 절대빈곤율 추이



자료: 임완섭(2013. 12).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불어 IMF 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명예퇴직 제도 등의 조기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령노동자가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주된 일자리(major career job)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비자발적 은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인 정년퇴직연령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3~56세 정도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25~30년의 은퇴생활을 하게 되었다.

비자발적인 은퇴는 자발적인 은퇴보다 노후 소득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 퇴직 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하는 소위 가교일자리진입(bridge

job)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5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1.8%, 2010년 62.7%, 그리고 2012년 64.7%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3)</sup>.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인한 생계형 취업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 시간동안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 고령자의 경우 건강상태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은 4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

3)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예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60~80세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인구 10만명 당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116.9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84.4명, 60대는 50.1명으로 8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20대 자살률의 5배에 달하고 있다<sup>4)</sup>. 노인자살의 경우 우발적 사건에 의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온 심리·환경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자살시도가 자살로 이어지는 성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11.2%이고 이 중에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건강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30.8% 그리고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이 15.6% 그리고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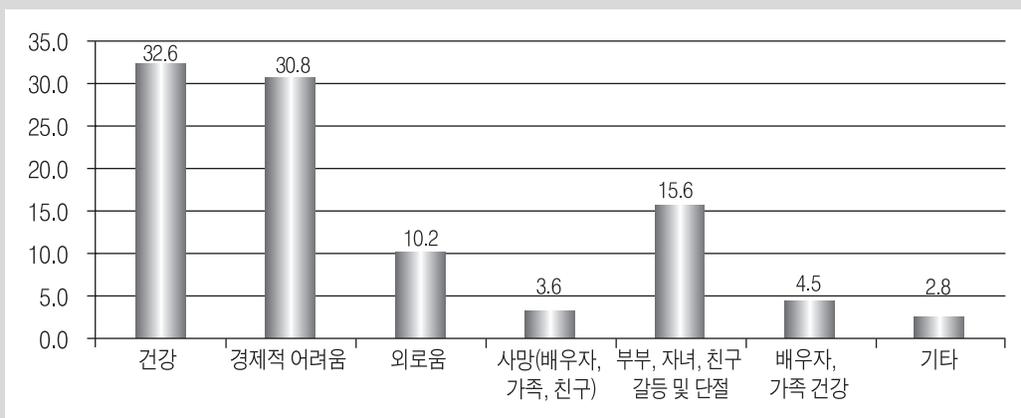
로움이 10.2%로 나타났다<sup>5)</sup>. 즉 노후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심리정서적 영역과도 연결되어, 동거가족 노인가구보다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현재 노후준비 현황

#### 1) 노후준비의 범위

향후 초저출산·초고령사회속에서 노인빈곤과 자살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미리 예방하는

그림 3. 자살생각이유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통계청(2012). 2011년 사망원인통계.

5)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방법 밖에 없다. 즉 국민 스스로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측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경제적 준비만 되어 있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짐승은 몸이 성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흔히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sup>6)</sup>고 언급하고 있다. 행복경제학에서도 한 나라가 소득의 증가를 통해 평균적인 행복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소득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소득 증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노후행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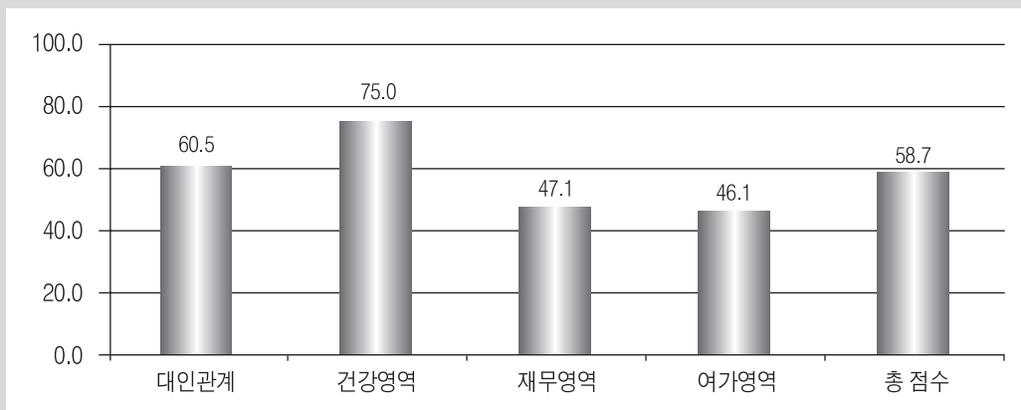
경제적으로 축적된 자산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념으로 대인관계, 건강, 여가를 포함한 개념이다. 즉,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건강상태,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이 필요하다.

## 2) 노후소득준비 수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상태를 전국적인 3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 등 4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노후준비 총점수는 100점 만점에 58.7점으로,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영역이 60.5점, 건강영역이 75.0점, 재무영역이 47.1점, 그리고 여가영역이 46.1점으로 나타났다.

노후전문가를 통해 산출된 적정 노후준비수

그림 4. 영역별 노후준비도



자료: 이소정(2013.6.25).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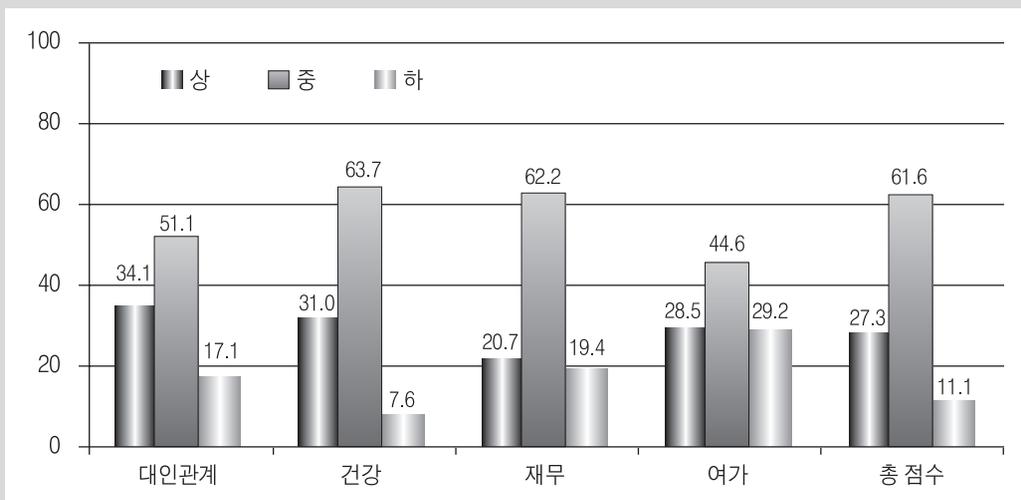
6) 버트런드 러셀, 행복의 정복(Conquest of Happiness), 이순희 옮김, 사회평론.

준을 상중하로 구분했을 경우 총 점수가 상(400점 만점에 260.4점 이상)에 해당해 비교적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비율은 27.3%,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더 좋아질 수 있는 중(185.9~260.3점)에 해당하는 비율은 61.6%, 그리고 노후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하(185.8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11.1%에 달했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 상(100점 만점에 70.2점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34.1%, 중(44.0점~70.1점)에 해당하는 비율은 51.1%, 그리고 하(43.9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17.1%에 달했다. 건강영역에서는 상(100점 만점에 79.8점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31.0%, 중(61.7점~79.7점)에 해당하는 비율은 63.7%, 그리고 하(61.6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7.6%에 달했다. 재무영역에서는 상(100점 만점에 60.7점 이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20.7%, 중(33.5점~60.6점)에 해당하는 비율은 62.2%, 그리고 하(33.4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19.4%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여가에서는 상(100점 만점에 65.6점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28.5%, 중(26.6점~65.5점)에 해당하는 비율은 44.6%, 그리고 하(26.5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29.2%에 달했다.

이처럼 각 영역별로 준비상태가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재무가 가장 낮고 여가,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영역 모두 그 비율이 너무 낮아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이야기하면 경제적 준비를 생각하지만 오히려 안정된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4개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의 경우 상에 해당하는 비율도 28.5%로 매우 높지만 하에 해당하는 비율도 29.2%로 양극화가

그림 5.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



자료: 이소정(2013.6.25),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발전방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에 해당되는 비율이 대략 50%로 이들의 경우 조금 더 노후 설계에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지금보다 충분히 개선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만일 개인들이 현재 자신의 노후소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환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노후에 낮은 삶의 질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대응노력 분석

### 1) 노후설계지원법의 가치재로서의 기능

결국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에 대한 선택에 있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시장을 통한 개인의 선택에 간섭하는 것은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따르면 경제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간섭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따르면 일정한 상황에 한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일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의 후생에 대해 내린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며, 이 때는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소득을 쌀과 같은 식품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음주나 도박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정부가 술에 대한 지출

을 줄이고 식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어느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시장이 아닌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치재(merit goods)라고 한다.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생산·공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가치판단을 개인에게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 선택의 자유 또는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과 일정부분 충돌 되는 경향이 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개인의 노후설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쪽에서는 왜 정부가 개인의 노후준비까지 신경 쓰느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유는 하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후설계를 무조건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 둔다면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에 높은 시간선호율을 적용하는 경향에 따라 노후준비를 뒤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적 시스템의 효율화와 함께 개인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2) 노후설계지원법(안)의 개념

노후설계지원법(안)은 우리사회의 성공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위해, 전국민의 노후설계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주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게 해석되었던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법안을 통해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sup>7)</sup>. 하지만 여기서 노후설계와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차이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후설계’란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설계에 대한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설계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하는 역할, 노후준비지표

의 제공 및 보급과 노후준비기준선의 마련, 노후설계서비스의 유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범위, 노후설계 서비스의 4대분야로서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설계 등의 정의를 담고 있다. 즉, 노후설계지원법(안)은 국민이 적절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기관과 관련된 항목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노후설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미래의 노후를 위해 노후설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

표 3. 노후설계지원법(안) 개요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국가의 책무 ▶ 타법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노후설계서비스 실태조사
제3장 노후설계서비스	▶ 노후설계지원사업 ▶ 노후준비지표 및 노후준비 기본선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 노후설계서비스의 분야
제4장 제공기관	▶ 노후설계위원회 ▶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평가
제5장 제공인력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인력 ▶ 제공인력 결격사유	▶ 제공인력의 금지행위 ▶ 보수교육의 실시
제6장 정보의 제공 등	▶ 노후설계서비스 정보의 활용 ▶ 개인정보 보호	▶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 연금종합정보시스템구축

자료: 이소정(2013, 10).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7) 이소정(2013, 10).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무영역과 함께 비재무영역에 대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재무영역에 한정되어 보험가입자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민간기업에서도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전직지원서비스 형태로 퇴직예정자 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종교기관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가, 오락 등의 비재무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연령대에 따라 관심영역이 다르고 발생하는 생애 사건들이 차이가 난다. 20대는 학업과 취업, 30대는 취업과 결혼 및 출산, 40대는 자녀 교육과 자산축적, 50대는 은퇴, 그리고 60대는 자녀의 결혼이 중요 사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수준과 선호의 차이에 따라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서비스는 획일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상담서비스가 일회성이며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인인력공단처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요자가 꾸준히 찾아오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이 일회성에 머물게 되고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방문서비스 역시 보험가입 당시에만 보험설계사가 방문하고 이후에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설계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구

준하게 생애주기에 맞게 상담과 교육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상담을 받기 위한 공간적·경제적 접근성이 낮다. 생명보험회사의 방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곤란하다.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인인력공단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수가 적어 공간적으로 접근도가 떨어지며,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 공간적·경제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제공주체가 다르더라도 재무와 비재무영역을 포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더 많은 노후설계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홍보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5. 나가며

근로 연령대에 예상했던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은퇴기간이 약 20년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을 더 많이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재무영역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후에 필요한 것은 소득에 대한 준비 뿐 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 형제와 친척 그리고 친구 등 다양한 관계망의 형성과 원활한 유지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노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고 늘어난 시간을 건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가습득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

런 의미에서 노후설계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의 재무설계뿐 아니라 대인관계, 건강, 그리고 여가까지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준비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노후준비를 개인이 혼자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정보와 함께 비용이 수반된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은 이러한 개인적인 준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노후설계의 주체가 개인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더라도 이를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실천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